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을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에 맞추어 매출 등급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안 별표 3)

- 1)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을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히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에 맞추어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며,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정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함.

3)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별표 3 제1호마목 중 “5천만원을”을 “1억원을”로, “5천만원으로”를 “1억
원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연간 총수입액	1일당 과징금 금액
1	1억원 이하	43,690원
2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09,240원
3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152,940원
4	2억원 초과 ~ 2억 5천만원 이하	196,640원
5	2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40,340원
6	3억원 초과 ~ 3억 5천만원 이하	284,040원
7	3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327,740원
8	4억원 초과 ~ 4억 5천만원 이하	371,430원
9	4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415,130원
10	5억원 초과 ~ 5억 5천만원 이하	458,830원
11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502,530원
12	6억원 초과 ~ 6억 5천만원 이하	546,230원
13	6억 5천만원 초과 ~ 7억원 이하	589,930원
14	7억원 초과 ~ 7억 5천만원 이하	633,630원
15	7억 5천만원 초과 ~ 8억원 이하	677,320원
16	8억원 초과 ~ 8억 5천만원 이하	721,020원
17	8억 5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764,720원
18	9억원 초과 ~ 9억 5천만원 이하	808,420원
19	9억 5천만원 초과 ~ 10억원 이하	852,120원
20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310,950원
21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184,930원
2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058,900원
2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3,932,870원
24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4,806,840원

25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680,820원
26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6,554,790원
27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7,428,760원
28	90억원 초과	8,302,74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 당시 과징금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61